

改正된 圖書館法施行令 全文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도서관법시행령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태우 인

1988년 8월 16일

국무총리 이현재

국무위원 김영식
문교부장관

◎대통령령 제12,506호

圖書館法施行令改正令

圖書館法施行令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圖書館法施行令 改正理由

圖書館法이 全面改正(1987. 11. 28, 法律 第3972號)됨에 따라 同法에서 委任된 사항과 그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主要骨子

- 가. 公共圖書館의 奉仕對象基準人口가 2萬人 이상 5萬人 미만인 경우의 施設 및 資料基準을 증진에는 閱覽室·書庫 및 事務室 面積만을 165제곱미터, 基準藏書를 1千卷 이상으로 하던 것을 圖書館의 現代的 機能遂行과 효율적 奉仕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視聽覺室·休憩室·複道·食堂 기타 附屬施設을 포함한 圖書館 全體建物面積을 660제곱미터, 基準藏書를 6千卷 이상으로 하는 등 奉仕對象人口 基準에 따른 公共圖書館의 施設 및 資料基準을 上向調整함(令 第3條 및 別表 1).
- 나. 公共圖書館에 두는 司書職員의 配置基準을 증진에는 圖書館의 建物面積을 基準으로 하여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3人을 두며, 3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65제곱미터 마다 1人 더 두던 것을, 앞으로는 圖書館 建物

面積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3人을 두고, 그 面積이 3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330제곱미터 마다 1人을 더 두며, 藏書가 6千卷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6千卷 마다 1人을 더 두도록 하는 등 각종 圖書館에 두는 司書職員 등의 配置基準을 上向調整함(令 第4條 및 別表 2).

- 다. 司書職員의 資格이 圖書館法의 改正으로 正司書 및 准司書에서 1級正司書·2級正司書 및 准司書로 구분됨에 따라 그 資格要件을 細分하고, 准司書의 資格要件을 증진에는 高等學校 卒業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學力이 있는 者로서 2年 이상 司書業務從事經歷이 있고 소정의 講習을 받은 者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專門大學 卒業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學力이 있는 者로서 소정의 教育過程을 履修한 者로서 하는 등 司書職員의 資格上을 위하여 그 經歷·學歷 및 研修過程을 上向調整함(令 第5條 및 別表 3).
- 라. 圖書館發展을 위한 重要政策의 수립등에 관한 文敎部長官의 諮問機關인 圖書館發展委員會는 文敎部次官을 委員長으로, 國立中央圖書館長을 副委員長으로 하고, 中央行政機關의 圖書館業務와 관련있는 關係局長과 圖書館學·文獻情報學 教授, 기타 圖書館에 관한 學識과 經驗이 있는 者중에서 文敎部長官이 위촉하는 委員 20인 이상 3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함(令 第7條).
- 마. 圖書館振興基金은 圖書館의 設立·施設 및 운영과 圖書館情報協力網의 구성 및 운영의 補助, 圖書館 및 圖書館 關聯團體의 研究活動의 지원 기타 圖書館振興을 위하여 필요한 事業의 지원에 사용하도록 함(令 第13條).
- 바. 國立中央圖書館 또는 公共圖書館에 제공 및 納本하여야 할 圖書·連續刊行物의 資料는 地圖·音盤·비디오資料·슬라이드 등으로 함(令

第19條第1項).

- 사. 公立公共圖書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두도록 되어 있는 圖書館運營委員會는 圖書館單位로 設置하되, 委員長 1人を 포함한 委員 10人 이상 15人 이내로 구성하도록 함(令 第22條第1項).
- 아. 각종 圖書館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連繫體制로 구성되는 圖書館情報協力網의 機能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中央館의 長(國立中央圖書館長)은 매년 3월말까지 圖書館發展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協力網運營計劃을 수립하여 이를 서울特別市·直割市 및 道の 地域代表館에 통보하고 地域代表館의 長은 協力網運營計劃에 따라 당해 市·道の 協力網運營計劃을 수립·시행하도록 함(令 第29條).

圖書館法施行令

제 1 조 (목적) 이 영은 도서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특수도서관의 이용자)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의료기관의 환자를 말한다.

제 3 조 (도서관시설 및 자료기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 종류별 시설 및 자료의 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 4 조 (사서직원 등의 배치기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서직원·사서교사 또는 실기교사(사서)의 배치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 5 조 (사서직원의 자격요건 등) ①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서직원의 자격요건은 별표3과 같다.

②사서직원은 별표3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문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으로부터 사서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제 6 조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상호 교환 또는 이관시에 참작하여야 할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료의 효율적인 보존·관리 및 적정수준 유지

2. 자료 이용자의 편의

3. 도서관의 특성과 전문성 제고

②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시에 참작하여야 할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용가치의 상실
2. 자료의 훼손 또는 오손
3.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망실

③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 또는 제적되는 자료를 제외한다)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장서의 3퍼센트 이내로 하되, 당해 연도 수입장서량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 7 조 (도서관발전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 이상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문교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립중앙도서관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경제기획원·내무부·재무부·문교부·체신부·문화공보부·과학기술처 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 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도서관과 관련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각1인
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협회의 장
3. 도서관학 또는 문헌정보학 교수 기타 도서관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문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 8 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할 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9 조 (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발전을 위한 기본정책과 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정보협력망의 체제구성 및 그 기능의 조

정·총괄에 관한 사항

- 3. 도서관진흥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4. 기타 도서관발전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문교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문교부 소속공무원중에서 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제12조(도서관진흥기금사무의 위임 등) ①문교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관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중 특정도서관 또는 특정지역 도서관진흥을 조건으로 한 기부금을 재원으로하여 조성된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당해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원회"라 한다)에 위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사무를 위임받은 교육위원회는 매 회계연도의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2월 20일까지 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이를 사용한다.

- 1. 도서관의 설립·시설 및 운영의 보조
- 2. 도서관정보협력망의 구성 및 운영의 보조
- 3. 도서관 및 도서관 관련단체의 연구활동 지원
- 4. 기타 도서관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지원

②문교부장관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이를 운용한다.

- 1.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치
-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 3.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기타 다른 기금에의 예탁

제14조(기금의 운용계획) ①문교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 3월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 2. 당해연도의 사업계획·지출원인행위계획 및 자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 3. 전년도 이월자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제15조(기금의 회계기관 등) ①문교부장관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사무를 위임받은 교육위원회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의 지출원인행위와 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명령관과 그 기금의 지출 및 수입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문교부장관 및 교육위원회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6조(국제교류를 위한 자료의 제공) ①국립중앙도서관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 또는 제작한 자료 중에 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교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때에는 필요한 수량·교류 대상 국가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자료가 보안업무 규정에 의한 비밀에 속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의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국립중앙도서관장은 국제교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정부투자기관 또는 출자기관의 장에 대하여 당해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국립중앙도서관의 지도·지원) 국립중앙도서관은 제1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도서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도·지원할 수 있다.

- 1. 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
- 2. 자료의 교환·이관·폐기·제작 및 대차
- 3. 도서관종류별 시범도서관의 운영
- 4. 사회교육활동 및 국민독서운동
- 5. 자료의 국제교류

6. 도서관발전을 위한 연구활동

제18조(사서직원의 연수 등) ①국립중앙도서관은 법 제16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서직원의 연수를 위하여 사서연수과정을 설치·운영한다.

②사서직원의 연수는 일반연수와 특별연수로 구분한다.

③사서직원의 연수대상·연수과정 기타 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교부령으로 정한다.

④국립중앙도서관장은 사서직원의 연수를 다른 도서관이나 도서관학과 또는 문헌정보학과를 둔 대학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제공 및 납본자료 등) ①법 제17조제1항·제2항 및 제31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라 함은 일반공중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한 자료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지도
2. 음반·비디오자료
3. 슬라이드
4. 전산화 자료중 테이프 및 디스크
5. 마이크로 형태물 중 창작된 자료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자료를 납본할 때에는 도서관자료납본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납본을 한 자에 대하여 도서관자료납본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자료를 납본한 자가 그 자료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할 때에는 납본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보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④국립중앙도서관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국립중앙도서관장은 납본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대표관의 장에게 납본업무의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국제표준자료번호의 부여)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표준자료번호(이하 “자료번호”라 한다)는 국제표준도서번호와 국제표준연속

간행물번호로 구분한다.

②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번호를 부여받고자 하는 자는 문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료번호부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립중앙도서관장은 자료의 이용과 유통과정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료번호의 부여시에 자료분류기호를 부가하여 부여한다.

④자료번호 및 자료분류기호(이하 “한국문헌번호”라 한다)의 부여대상·절차 및 표시방법등에 관하여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문헌번호운영심의회 회의 심의를 거쳐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정한다.

⑤국립중앙도서관장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번호의 부여에 관한 업무를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대표관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한국문헌번호운영심의회) ①한국문헌번호의 부여에 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한국문헌번호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정한다.

제22조(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국립공공도서관 단위로 설치하되,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도서관장과 봉사대상구역내의 교육계·문화계인사 및 이용자 중에서 당해 도서관의 설립자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23조(운영위원회의 직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기타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제24조(운영위원회 회의 등)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사립공공도서관 등의 등록) 법 제24조 및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설립등록신청서에 시설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군 교육장(서울특별시·직할시의 교육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사립공공도서관 등의 폐관신고) 법 제28조 제1항(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폐관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폐관신고서를 관할 시·군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공공도서관의 사용료)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받을 수 있는 사용료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관료
2. 데이터베이스 이용 수수료
3. 개인연구실·회의실등 이용수수료
4. 자료복사료

제28조(도서관정보협력망의 조직) ①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정보협력망(이하 "협력망"이라 한다)은 도서관의 종류별로 이를 구성할 수 있다. ②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대표관이 지방대표관을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서울특별시·직할시의 구에 한한다)의 공공도서관중에서 이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방대표관을 지정한 때에는 중앙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협력망운영계획) ①중앙관의 장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망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3월말일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력망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지역대표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지역대표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 받은 협력망운영계획에 따라 당해 특별시·직할시 및 도의 협력망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0조(과태료의 부과) ①법 제47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문교부장관·교육위원회 또는 교육장(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이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관할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관할청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문교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 규정은 1990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국제교류를 위한 도서관 자료납본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설립된 도서관으로서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이나 신체장애자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관할시·군교육장에게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조(도서관의 시설·자료 및 사서직원 배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별표1에 의한 도서관 종류별 시설 및 자료기준과 별표2에 의한 사서직원·사서교사 및 실기교사(사서)의 배치기준에 미달하는 도서관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하여야 한다.

제5조(정사서·준사서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사서직원의 자격증을 받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종전의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사서 또는 준사서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은 별표3에 불구하고 이 영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사서직원의 자격증 또는 상급

자격증을 받기 위하여 종전의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거나 교육과정을 이수한 때에는 별표3에 불구하고 이 영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이 영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서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이 되고,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문교부령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별표3에 불구하고 이 영에 의하여 준사서의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2년(제3항의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문교부장관에게 해당 자격증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교부장관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자격증을 교부할 때에는 부칙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6 조(정사서 및 준사서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정사서로서 별표3의 1급정사서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 영에 의한 1급정사서로, 1급정사서의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 영에 의한 2급정사서로 보며, 이 영 시행당시 준사서는 이 영에 의한 준사서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급정사서 또는 2급정사서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문교부장관에게 해당 자격증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별표 1]

도서관 종류별 시설 및 자료 기준(제3조 관련)

1. 공공도서관

봉사대상 기준인구	시 설		자 료	
	건 물 (제곱미터)	열람석 (좌석수)	기본장서 (권)	연간증가 (권)
2만미만	264이상	60이상	3,000이상	300이상
2만이상 5만미만	660이상	150이상	6,000이상	600이상

봉사대상 기준인구	시 설		자 료	
	건 물 (제곱미터)	열람석 (좌석수)	기본장서 (권)	연간증가 (권)
5만이상 10만미만	990이상	200이상	15,000이상	1,500이상
10만이상 30만미만	1,650이상	350이상	30,000이상	3,000이상
30만이상 50만미만	3,300이상	800이상	90,000이상	9,000이상
50만이상	4,950이상	1,200이상	150,000이상	15,000이상

비고 : 가. 기준인구수는 도서관이 설치되는 당해 시(구가 설치된 시를 제외한다)·구·읍·면의 인구를 말한다.

나. 봉사대상기준인구가 2만이상인 공립공공도서관에는 열람실외에 참고열람실·연속간행물실·시청각실·회의실·사무실 및 자료비치시설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어린이를 위한 열람석은 전체 열람석의 2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라. 노인 및 신체장애자를 위하여는 전체 열람석의 10퍼센트 범위안에서 열람석과 필요한 시설 및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마. 공공도서관에는 기본장서외에 연속간행물을 봉사대상 1천인당 1종, 시청각자료를 봉사대상 1천인당 10종을 각각 갖추고, 기타 향토자료·전산화자료·행정자료 등을 갖추어야 한다.

바. 사람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봉사대상기준인구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자료기준은 자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운영할 수 있다.

2. 대학도서관

대학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기준은 대학설치기준령 및 전문대학설치기준령의 규정에 의하되, 학술정보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시청각기재·전산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3. 학교도서관

학교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기준은 학교시설·설비

기준령의 규정에 의하되, 교수 학습자료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시청각·컴퓨터교육자료 등을 갖추어야 한다.

4. 전문도서관(공중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봉사대상	시 설 및 자 료 기 준
공 중	열람실 면적이 165제곱미터, 전문분야 자료가 3천권(시청각 자료인 경우에는 점) 이상이어야 한다.

5. 특수도서관(시각장애자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봉사대상	시 설		자 료	
	건 물	기계·기구	장 서	녹음테이프
시각장애자	·면적 : 66제곱미터 ·서고 : 면적의 25퍼센트 이상 ·인쇄실 : 면적의 35퍼센트 이상	1. 점자제판기 2대 이상 2. 점자인쇄기 1대 이상 3. 점자타자기 3대 이상 4. 녹음기 4대 이상 다만, 건물면적이 33제곱미터 증가할 때마다 점자제판기 1대·점자인쇄기 1대·점자타자기 2대 이상을 각각 증설하여야 한다.	1 천 500권 이상 이 상 다 만, 건 물 면 적 마 다 200 점 을 추 가 하 여 야 한 다. 증 가 할 때 마 다 1천 권 을 추 가 하 여 야 한 다.	500점 이상 다만, 건물 면적이 33 제곱미터 증가할 때 마다 200 점을 추가 하여야 한 다.

비고 : 가. 건물면적이 99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녹음실·열람실 및 사무실의 크기가 각각 건물면적의 1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나. 건물면적에는 현관·휴게실·복도·화장실 및 식당등의 건평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별표 2]

사서직원·사서교사 및 실기교사(사서)의 배치기준
(제4조관련)

구 분	배 치 기 준
공공도서관	도서관 건물면적이 33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사서직원 3인을 두되, 그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330제곱미터마다 사서직원 1인을 더 두며, 장서가 6천권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6천권마다 사서직원 1인을 더 둔다.
대학도서관	당해 대학의 학생수가 1천인이하인 경우에는 사서직원 4인을 두되, 그 학생수가 1천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학생수 1천인마다 사서직원 1인을 더 두며 장서가 2만권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2만권마다 사서직원 1인을 더 둔다.
학교도서관	1. 국민학교에는 36학급미만인 경우 사서교사·겸임사서교사(사서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학급이나 교과수업을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실기교사(사서)중 1인을 두며, 36학급이상인 경우 사서교사 1인을 두거나 겸임사서교사와 실기교사(사서) 각 1인을 둔다. 2.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는 24학급미만인 경우 사서교사 1인을 두거나 겸임사서교사와 실기교사(사서) 각 1인을 두며, 24학급이상인 경우 사서교사 2인을 두거나 사서교사와 겸임사서교사 각 1인 또는 사서교사와 실기교사(사서) 각 1인을 둔다.
전문도서관 또는 특수도서관	1. 공중을 봉사대상으로 하는 전문도서관은 공공도서관에 관한 사서직원의 배치기준을 준용한다. 2. 시각장애자를 봉사대상으로 하는 특수도서관은 사서직원 1인 이상을 둔다.

[별표 3]

사서직원의 자격요건(제5조 관련)

자 격	자 격 요 건
1급정사서	1. 도서관학 또는 문헌정보학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 2. 2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학 또는 문헌정보학의 박사학위를 받거나 정보처리기술사 자격을 받은 사람 3. 2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근무경력 기타 문교부령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도서관학 또는 문헌정보학에 관한 연구경력(이하 “도서관등 근무경력”이라 한다)이 6년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4. 2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등 근무경력이 9년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문교부령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이하 “소정의 교육과정”이라 한다)을 이수한 사람
2급정사서	1.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방송통신대학·개방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도서관학과 또는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한 사람 2. 도서관학 또는 문헌정보학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자 격	자 격 요 건
	3. 도서관학 또는 문헌정보학의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4.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5.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등 근무경력이 4년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6. 대학을 졸업하여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등 근무경력이 1년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준 사 서	1. 전문대학 도서관과를 졸업한 사람 2. 전문대학(중전의 실업고등전문학교를 포함한다)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중 도서관학 또는 문헌정보학을 부전공한 사람

비고 :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요하지 아니하는 전문도서관 또는 특수도서관에서의 근무경력은 당해 도서관의 열람실 면적이 110제곱미터·자료가 1천500권(시청각자료인 경우에는 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 표에 의한 도서관근무경력으로 인정한다.